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4.

제안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청 소 과)

제안사유

-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육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 분뇨관련영업요금이 물가인상등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영업상 문제점과 그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시민의 이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 요금기준을 18리터(ℓ)단위에서 10리터(ℓ)단위로 함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요금 기준을 입방미터(m^3)와 리터(ℓ)로 병기함.
-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하여 적실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축사육의 제한」조항 보완추가(안 제8조)
 - 현행 : 가축사육 제한근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가축사육금지 지역고시, 고시지역의 가축사육허가, 무허가 가축사육시 필요조치등

• 개정 : 사육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 내용추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추가

○ 가축사육허가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간소화함. (안 제9조)

○ 분뇨관련 영업요금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변경(안 제10조)

• 현 행

- 분뇨수집·운반요금 : 18ℓ당 214원(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포함)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요금 : 0.75㎥당 12,350원

- 초과요금 : 0.75㎥초과시 0.1㎥마다 893원가산

• 개 정

-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30원(처리수수료 포함)

-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 기본요금 : 0.75㎥(750ℓ)이내 12,960원

- 초과요금 :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

○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함

3. 관련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제19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6항, 제58조제1항제5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안) : 붙임

6. 기타참고사항 : 붙임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용증명서 제시”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명중 “영업”을 “영업의 허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30원(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 가. 기본요금 : 0.75㎥(750ℓ)이내 12,960원
 - 나. 초과요금 :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

② 동조제1항제2호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발생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정화조 청소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수수료는 대구직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④ 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동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중 부과대상란 제5호중 나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며, 동표 “주”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각각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호로 한다.

2. 하나의 부과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6.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자(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2항)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5㎥미만인 정화조 및 신고대상인 축산 폐수정화시설	50	100	150
(2) 처리용량 5~10㎥미만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신고대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	100	150	200
(3) 처리용량 10~20㎥미만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150	200	250
(4) 처리용량 20~30㎥미만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200	250	300
(5) 처리용량 30~50㎥미만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250	300	400
(6) 처리용량 50~100㎥미만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300	400	500
(7) 처리용량 10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400	600	800
(8) 허가대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	300	500	8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분뇨관련영업)</p> <p>(생략)</p> <p>제11조(분뇨관련 영업요금) 법 제3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뇨 · 수집운반요금 : <u>18ℓ당 214원</u> <u>분뇨</u> <u>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포함)</u> 2. <u>정화조 청소요금</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요금 : <u>0.75㎥이내 12,350원</u> 나. 초과요금 : <u>0.75㎥초과시 0.1㎥마다</u> <u>893원 가산</u> <p><u>“주”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 용량을 말하며</u> <u>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수수료(1ℓ당</u> <u>1원)가 포함된 요금임</u></p> 	<p>제10조(.....영업의 허가)</p> <p>(현행과 같음)</p> <p>제11조(.....영업의요금) ①.....영업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뇨 · 수집운반요금 : <u>10ℓ당 130원</u> (처리 수수료 포함) 2. <u>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요금 : <u>0.75㎥(750ℓ)이내 12,960원</u> 나. 초과요금 : <u>0.75㎥(750ℓ)초과시 0.1㎥</u> <u>마다(100ℓ)마다 937원</u> <p>② “<u>동조제1항제2호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u> <u>화조별로 발생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u> <u>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처</u> <u>리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정화조 청소요금</u> <u>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u></p> <p>③ <u>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수수료는</u> <u>대구직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u> <u>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다.</u></p> <p>④ <u>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동조제1항제2</u> <u>호,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산정방법을 준용</u> <u>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나.			
(1) <u>처리용량</u> 이 <u>10m³미만</u> 인 <u>정화조,</u> <u>축산폐수정화</u> 시설(신고대 상)	100	200	300	(1) <u>처리용량</u> <u>5m³미만인 정</u> <u>화조 및 신고</u> <u>대상인 축산</u> <u>폐수정화시설</u>	50	100	150
(2) <u>처리용량</u> 이 <u>10m³이상</u> 인 <u>정화조,</u> <u>오수정화시설</u>	300	500	800	(2) <u>처리용량</u> 이 <u>5~10m³미</u> <u>만인 정화조,</u> <u>오수정화시설</u> 및 <u>신고대상</u> 인 <u>축산폐수</u> 정화시설	100	150	200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처리용량 10~ <u>20㎥미만인 정화조,</u> <u>오수정화시설</u>	150	200	250
				(4) 처리용량 20~ <u>30㎥미만인 정화조,</u> <u>오수정화시설</u>	200	250	300
				(5) 처리용량 30~ <u>50㎥미만인 정화조,</u> <u>오수정화시설</u>	250	300	400
				(6) 처리용량 50~ <u>100㎥미만인 정화</u> <u>조, 오수정화시설</u>	300	400	500
				(7) 처리용량 100㎥ <u>이상인 정화조, 오</u> <u>수정화시설</u>	400	600	800
				(8) 허가대상인 축 <u>산폐수정화시설</u>	300	500	800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생 략) 6~9(생 략)				다. (현행과 같음) 6~9(현행과 같음)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 임 신고를 하 지 아니한자 (법 제42조제3항)	300	500	1000	10. (.....제2항)
주1. (생 략) (신설)	주1. (현행과 같음) 2. <u>하나의 부과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u> <u>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u> <u>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u>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u>축산폐수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u> <u>제1항 및 제2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u> <u>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u> <u>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u> <u>(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u> <u>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u> <u>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u>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오수정화시설의 관리등) ① 생략

②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내부청소등 종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의 처리) ①~⑤ 생략

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분뇨관련영업) ①~⑤ 생략

⑥ 분뇨관련영업자는 당해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생략

5.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 한 자

6~16. 생략

②~⑤ 생략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생략

3. 경화조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 구역안의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은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는 탈수하여 처분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구직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처리수수료율등) ① 대구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 수집·운반된 분뇨등을 위생처리하는 경우 분뇨등의 수집·운반시에 배출자로부터 분뇨등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처리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등) ① 시장은 처리수수료를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시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징수대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수집·운반한 분뇨등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